

(제76회 - 산업건설 제6차)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 수도급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47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2001. 7. 13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겸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 수행 시 상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이관 사무의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장치손료 체납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함. (안 제35조제1항)
- 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리자가 세대별 겸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함. (안 제40조)
- 다.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삭제함. (안 제4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발췌)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중 “100분에 5에”를 “100분의 3에”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점침 및 요금부과 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의 사용료 감면은 2004년 1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자	수용가번호		수 용 가 명	
	주 소			
	관리자성명		연 락 처	
신 청 내 역	공동주택 세대수	세대	감 면 금 액	월 원 (세대당 월100원)
	공동주택 관리인유무	(관리인 있음, 관리인 없음)		
	감면사유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감면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가구분할 신청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

7. 공동주택세대의 요금부과 제도 개선

□ 현 황

- 현재 서울 인천시의 일부공동주택은 시에서 세대별 검침 및 고지하고 있음.(서울은 98년 이전분, 인천은 80년 이전 급수승인분)
- 그외 광역시 및 시군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계량기만 검침·고지하며, 세대별 검침은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음
 -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검침·고지 요구민원 다발
 - 일부지자체의 경우 공동주택 검침에 대한 검침수수료 지급 요구

* 민원사례

- 세대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세대별 검침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전의 사례를 들며 수전당 일정액의 검침비용 지급 및 사용료 감면 요구

□ 개선요지

- 현행 공동주택에 대한 주계량기 검침방법을 일부보완
 -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에 한해 세대별 검침·고지로 민원해소
-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정액을 감면하는 등 분쟁의 사전해소

* 공동주택 검침 위탁수수료 기준(사례)

행 정 자 치 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

12. 소비자피해구제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5%의 가산금을 정수
- 수수료·수도료 등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장기단수피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 소비자단체에서 재정경제부에 정책건의
 - 수수료, 수도료에 대해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하향조정(전화, 전기 1.5~2.5%)
 - 장기단수피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기준 마련(영국은 철저보상)

□ 개선요지

-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3%로 하향조정
 - * 전기·전화 등에 대한 가산금은 1.5~2.5%
- 수도요금과 수수료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 지방재정법 제69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5년의 소멸시효 적용토록 규정('00지방상·하수도사업 지침으로 기 통보)
 - 다만, 가산금·과태료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 손해금, 질서벌로서의 부과금 등으로 5년의 소멸시효 적용 타당
- 합리적인 사유없이 장기간 단수 및 예고 없는 갑작스런 단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가능하도록
 -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수도서비스현장」 등에 규정

행 정 자 치 부

관련 법 규

□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략>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98. 1. 19>

□ 영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1조(공동주택 및 아파트등에 의한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호별 월사용량을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호별 시설부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